

「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8일

강 원 도 지 사

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1. 제정이유

일자리 서비스의 통합 제공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, 강원도민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일자리 재단을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고,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, 법인격,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정관,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6조)
- 다. 재정지원, 적립금,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9조)
- 라. 사무의 위탁, 공무원 파견, 공유재산 대부,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5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(월)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(참조 : 일자리 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참고사항

《의견제출 및 문의처》

- 주 소 : (우) 24353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5, 5층 일자리정책과
- 전 화 : 033-249-2785
- 팩 스 : 033-249-4046
- 이메일 : lsd99cup@korea.kr

4. 참고사항

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: 붙임

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일자리 서비스의 통합 제공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, 강원도민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) 강원도일자리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3조(사업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산업 및 고용·노동실태 분석, 일자리 정책 수립 개발 및 연구
2.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운영
3. 훈련수급 조사·분석 및 인력 양성, 일자리정책 수행 역량 강화 지원
4. 창업 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, 교육 등 일자리 창출 사업
5.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·알선·교육, 채용 행사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
6.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, 강원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구인구직 정보 관리
7.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,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공제 사업 및 기업 복지 지원 사업
8. 청년·어르신·여성·장애인 등 대상별 취업 및 창업 지원, 교육, 정보 제공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
10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산에 관한 사항
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6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
7.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해산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원)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사장은 도지사로 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며 업무를 통할한다.

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⑤ 임원의 임면, 임기 및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조(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

어 회무를 통할한다.

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지원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적립금)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
제9조(운영재원)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적립금 및 그 이자 수입금
3.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
4.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

제10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·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공무원의 파견)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관리위탁하거나 사용·대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지도·감독 등)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- 제30조의4(파견근무)**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(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),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,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-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·기간·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